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70 관련
----------	-----------

제안연월일 : 2023년 3월 6일
제안자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1. 수정이유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규정을 체계화하고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층구조 지하보행로에만 적용하는 침수방지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7호 삭제).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 설치에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7호를 삭제한다.

안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0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지하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지하공공보도시설 내에서의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p> <p><u><신 설></u></p>	<p>제10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제11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10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1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 ① ----- ----- ----- ----- --.</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

- ①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지하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지하공공보도시설 내에서의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p> <p><신 설></p>	<p>제10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1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p> <p>①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